

집합투자규약 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이스트스프링 글로벌 리더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8.9.28, 2019.1.15 시행)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19.9.16.)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u>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⑥ <생략>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u>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u>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u> ③<삭제> ④ <u>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u> ⑤~⑥ <현행과 동일>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	제11조 <삭제>

<p>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p> <p>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12조<삭제></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p> <p>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p>	<p>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p> <p>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p> <p>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p>
<p>③<생략></p>	<p>③<현행과 동일></p>
<p>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①~④<생략></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실질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질수익자(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명부</u>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u>실질수익자</u>의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수익자명부)</p> <p>①~④<현행과 동일></p> <p>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u>수익자</u>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수익자</u>(자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u>수익자</u>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p>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u>수익자명부</u>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u>수익자의</u> 성명(자투자신탁 구의 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p>	<p>⑦<삭제></p>

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p>⑧ <생략></p> <p>제15조(자산운용지시등)</p> <p>① <생략></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생략></p>	<p>⑧ <현행과동일></p> <p>제15조(자산운용지시등)</p> <p>① <현행과동일></p> <p>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 <현행과동일></p>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p>
<p>1.~8. <생략></p> <p>② <생략></p>	<p>1.~8. <현행과동일></p> <p>② <현행과동일></p>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p>① <생략></p> <p>② <u>투자자는</u>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u>고객은</u>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p>
제26조(환매업무)	제26조(환매업무)
<p>①~③ <생략></p> <p>④ <u>실질수익자(법 제3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u></p> <p>⑤ <u>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⑥ <u>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u></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p>⑤ <삭제></p> <p>⑥ <삭제></p>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④<생략>	②~④<현행과동일>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③<생략>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③<생략> ④<삭제>
제44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생략>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현행과동일 >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생략>	③<현행과동일>
제47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u>소각</u>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7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①<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u>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u>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한 매도
제48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u><추가></u>	제48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할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②~⑤<생략>	② ~⑤<현행과동일>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⑤<생략>	제49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⑤<현행과동일>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⑨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⑨ <현행과동일>